

여비지급규정

제 정 1995. 3.
개 정 2011. 4.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한다) 교직원이 교직원 복무규정 제5장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무의 종류) 공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를 대표하는 각종 교육, 행사, 시찰 및 회의참석
2. 학교 행정상의 공무집행
3. 학문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학술회의 참석
4.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의 취업지도 및 산학협력교류를 위한 기업체 방문

제3조 (공무의 승인) 공무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과 같은 여행의 기본 교통운임과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과 같은 현지체재 비용으로 한다.

제5조 (여비의 계산) 여비는 정상적인 여정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실제로 경과한 여정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제6조 (출장일수의 계산) 출장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다만, 천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체재가 연장된 경우에는 이를 출장일수로 간주 계산한다.

제7조 (대동자의여비) 전임교직원과 동일한 목적의 학교업무 수행할 목적으로 전임교직원 이외의 자를 출장에 대동하였을 경우에는 본 대학 전임교직원에 적용되는 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장 여비지급 범위 및 방법

제8조 (교통운임의 범위) ①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단, 학교 소유의 차량으로 출장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제2조 4의 경우에는 별도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 운임을 지급한다. (단, 거주지 출장시는 학사부총장이 운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1.4.1.]

제9조 (실비교통운임의 지급)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통운임정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체재여비의 범위) ①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②수로여행에 있어서는 천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 및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식탁료(야식)등과 같이 따로 식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숙박

의 횟수에 따라 식비로 지급한다.

제11조 (교원연수비 지급) 교원의 연수는 국내 및 국외연수로 구분하고 교내연구비 지원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지급제한) ①학생활동지도에 따르는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비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학생의 견학 및 교외실습지도에 따르는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비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예산과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③공무 및 연수로 인한 출장이라도 행사 주관 단체에서 경비 일체를 제공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지급특례) ①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의 지급제한에 관계없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수행의 경우 여비지급액은 상위자에 준한다.

③교직원 이외의 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근무지내 출장의 현지교통비) 근무지내의 출장에 있어서는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현지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국외여비) 학교공무로 국외연수 및 여행을 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에 정한 금액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기타) 여비지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등을 준용하되, 이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